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85호
2.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0. 10.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도로교통법,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육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안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교육안전 범위 중 교통안전에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5조제4호)

Ⅳ.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입법예고 : 2023. 10. 26. ~ 10. 30.(의견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0일 김동욱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85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까지 확장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교육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 중 교통안전에 대한 범위를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추가하여 규정(안 제5조제4호)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고,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통학로 보도 신설,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교통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보이고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부재를 나타내고 있는 바¹⁾, 이에 대한 조속한 교육이 절

실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상 교통안전의 범위에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추가한 것은 보행통행과 관련한 학생의 위험행동
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사고위험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
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2023.10.27.)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성운 (2180-8266)
----------	--------------------	-------	--------------------

1)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두 청소년이 스쿨존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옴.
“‘민식이법 놀이’?... 스쿨존·횡단보도 드러누운 10대들”(연합뉴스, 2023.8.29.)
“스쿨존 30km 지키면 뭐하냐.. 기가 막힌 아이들 장난”(YTN, 2023.8.30.)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3. 11.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